

#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동향 분석



김문수 · TTA 통신망기술위원회 요금 및 상호접속전담반(TF02.07) 간사  
ETRI 서비스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 I. 서론

'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더불어 이동통신은 기술 진보와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정보통신 서비스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 이동통신은 통신의 개인화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재 이동통신은 유선전화 서비스의 트래픽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매출규모 측면에서도 유선전화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동통신 기술발전과 수요확산에 따라 기존 유선망과의 접속 서비스 역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유·무선 사업자간 접속료 및 정산문제가 중요한 통신규제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선망과 무선망 간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산정에 대한 규제 이슈는 이제 한 국가 내서의 유·무선 사업자간 문제가 아닌 국가간 즉, 국제 유·무선망간 상호접속료 이슈로 현재 ITU-T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통신 선진국에서는 이동망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이동망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에 대하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선사업자 및 규제 당국자들은 이러한 국제 이동망 착신료가 매우 높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종 이용자의 효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동망으로의 착신료가 매우 높은 경우, 유선망에서 발신하는 국가의 이용자가 이동망으로 착신하는 국가의 이동망 개발과 서비스 확산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TAR, 2001).

유·무선망간 상호접속료 설정에 관한 ITU-T의 권고안 D.93(2000)에 의하면 “유·무선 사업자들이 이동망으로의 착신비용과 고정망으로의 착신비용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원가에 근거한 요금 산정에 합의한 경우에, 이동망의 착신요금에 대한 비대칭적 요금설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고정 및 이동망 착신요금은 트래픽 착신비용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정 및 이동망 착신료의 차이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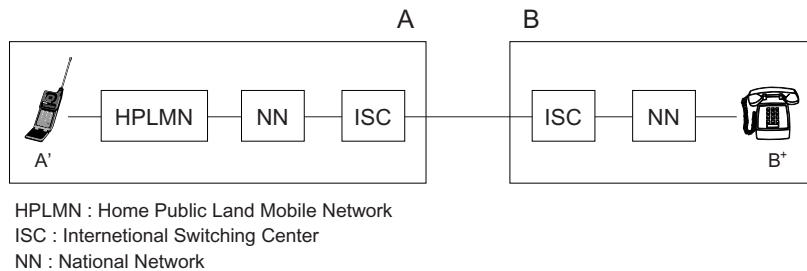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유럽 국가와 아시아의 몇몇 통신 선진국에서 이러한 고정 및 이동망의 착신료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 통신규제 당국자, INTUG과 같은 통신이용자 권리 대변 기관, 유선사업자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가 미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ITU-T의 국가간 요금 및 회계정산 관련 표준화를 통해서 국제 이동망 착신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동통신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동망 착신료 관련 국제표준화는 유·무선 사업자뿐 아니라 규제 당국자 및 최종 이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제 이동망 착신 서비스와 착신료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ITU-T의 Study Group 3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착신료 관련 표준화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국제 이동망 착신료 현황분석

### 1. 국제 이동망 착신 서비스

■ 사례 1: 이동망에서 고정망으로의 착신



(그림 1) 국가간 Mobile to Fixed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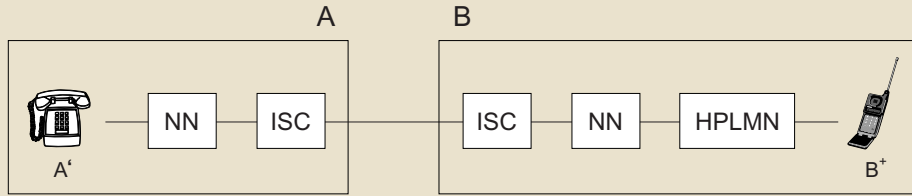
ITU-T 권고안 D.93의 Annex A에서 국제 호 라우팅의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요금 및 회계원칙에 대한 적용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유·무선 사업자간 이동망 착신 서비스 개념과 차이는 없다. 다만 국가간 상호접속을 위한 국제교환국(ISC)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개의 국가간 고정 및 이동망 간 상호접속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림 1 참조)

A국의 이동 단말기 A\*는 가입된 자국의 이동망인 HPLMN을 통해서 고정망인 NN<sup>1)</sup>과 국제관문국(ISC)을 이용하여 B국의 고정망에 착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A국의 이동망 이용자 A\*는 자신의 발신 통화량에 따라서 자국의 이동망에 의해 이용요금(소매 고정망 착신료-자국 이동망 및 고정망 이용비용 그리고 착신국의 고정망 이용비용이 포함)이 부과된다.

사례 2는 사례 1의 경우의 역순으로 A국의 유선 이용자 A'는 자국의 고정망인 NN과 국제관문국(ISC)을 이용하여 B국의 이동망에 착신한다. 이 경우 A국의 고정망 이용자 A'는 자신의 발신 통화량에 따라서 자국의 고정망에 이용요금(소매 이동망 착신료-자국 고정망 이용비용 그리고 착신국의 고정망 및 이동망 이용비용이 포함)을 납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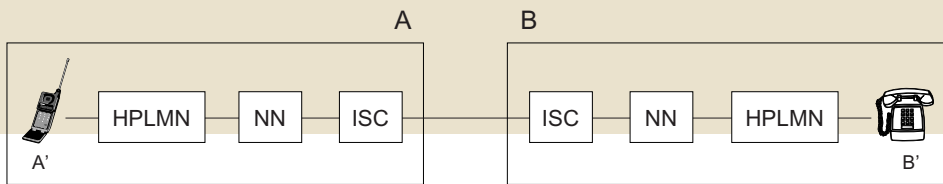
1) HPLMN과 NNI 이동 및 고정망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두 사업자의 망간 상호접속이 필요하며, 따라서 상호접속료 이슈가 발생한다. 이 경우 A국 내부의 접속료 규제에 따라 사업자간에 정산하게 되며, 이용자의 국제통화료에 이러한 mobile to fixed 요금이 포함된다.

■ 사례 2 : 고정망에서 이동망으로의 착신



(그림 2) 국가간 Fixed to Mobile Service

■ 사례 3 : 이동망에서 이동망으로의 착신



(그림 3) 국가간 Mobile to Mobile Service

사례 3은 국가간 이동망 간 상호접속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두 개의 사례의 트래픽 경로상에서 보다 많은 망 요소가 필요하다. A국의 이동단말기 A\*는 가입된 자국의 이동망인 HPLMN을 통해서 고정망인 NN과 국제관문국(ISC)을 이용하여 B국의 이동망에 착신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B국의 트래픽 경로는 A국의 역순이 된다. 이 경우 A국의 이동망 사용자 A\*는 자신의 발신 통화량에 따라서 자국의 이동망에 의해 이용요금(소매 고정망 착신료-자국 이동망 및 고정망 이용비용 그리고 착신국의 고정망 및 이동망 이용비용이 포함)이 부과된다.

2. 국제 이동망 착신료 현황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국가간 이동망 착신 서비스 이용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국제정산은 사업

자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통신 규제자들에게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국에서 타국의 이동망으로의 발신 트래픽이 많으면서 이용 접속료 부담이 매우 큰 국가일수록 이동망 착신료 문제는 유선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통신 효율측면에서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간 이동망 착신문제는 주로 통신 선진국인 EU와 일본의 이동망 착신 서비스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Section 1377”에서 EU와 일본의 무선사업자의 도매 이동망 착신료가 착신 원가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빠른 성장에 따라 미국 유선사업자와 일반이용자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EU 국가들과 일본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원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요금으로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2) <http://www.ustr.gov/sectors/industry/Telecom1377/2002review.PDF> 참조

한편, 러시아는 2001년 ITU-T SG 3회의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이동망 착신료가 너무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러시아의 이용자들이 유럽의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면서, ITU-T 권고안 D.93에 이동망과 고정망 간 착신료의 차이가 0.02 SDR<sup>3)</sup>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다(TAR, 2001).

국제 이동망 착신료에 대한 이러한 국가별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동망으로의 도매 및 소매 착신료가 기존 고정망에 비해 현저히 높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eleGeography(2002)<sup>4)</sup>에 의하면 2000년 31개 국의 고정 및 이동망의 국제 착신료를 조사 보고하였는데, 이를 대륙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르면 몇몇 국가에서 이동망 착신료가 고정망 착신료에 비해 무려 12배나 큰 경우도 있다.

### 3. 국제망 간 착신료 괴리요인

고정 및 이동망 간 착신료 괴리의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사업자별로 다르게 분석되고 있다. 이동망 사업자 측면에서는 착신 서비스의 원가특성 요인과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인 네트워크 외부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고정망 사업자 측면에서는 경쟁 부재와 비대칭 규제에 원인을 두고 있다.

고정 및 이동망 간 분당 원가측면에서 가입자 접속부문에 대한 적용에 따른 차이와 망간 통화량의

[표 1] 대륙별 고정 및 이동망 도매 착신료(자료: TeleGeography)

(단위 : US cents/min)

Country	Wholesale Rate to Destination Fixed	Wholesale Rate to Destination Mobile
Africa	22	24
Latin America & Caribbean	12	16
USA & Canada	2	2*
Asia & Oceania	15	16*
Europe	4	16

주) 미국, 캐나다, 아태의 몇 개국에서는 국내 이동망 비용(local airtime costs)은 착신자가 부담(즉, Receiving Party Pays)

[표 1]에서 미국 및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이동망 착신료가 고정망 착신료에 비해서 높다.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조사되었으며, Latin America & Caribbean, Asia & Oceania 그리고 Europe 지역의 이동망 착신료는 같고 반면에 다른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및 호주 지역의 고정망 및 이동망의 착신료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 국가별 자료에 따

크기에 따른 차이가 착신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통신규제 기관인 Oftel<sup>5)</sup>에 의하면 고정망 서비스의 분당 제공비용은 0.5펜스인 반면에 이동망 서비스의 분당 제공비용은 5펜스로 10여 배 높은 것으로, 이는 고정망에 비해 이동망의 상당 부분이 TS (Traffic Sensitive)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입자단말기에서 지지

3) 1 SDR = US\$ 1.33173 (2002. 9. 4 기준)

4) [http://www.gii.co.jp/english/tg8394\\_telegeography.html](http://www.gii.co.jp/english/tg8394_telegeography.html)

5) <http://www.itu.int/md/meetingdoc.asp?type=mitems&lang=e&parent=T01-SG03-020610-TD-WP2-008>

국(Base station<sup>6)</sup>)까지의 접속구간의 비용을, 전송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이다. 반면에 고정망의 가입자 회선 혹은 접속망은 NTS(Non-Traffic Sensitive)로 검토되고 있다. 만일 BT의 이러한 가입자 회선의 비용을 모든 발신 및 착신 이용시간상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분당 1.4-1.5 펜스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고정망의 낮은 비용은 이동망에 비해 통화량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한다. BT의 경우 착·발신 통화분수는 연간 3000억 분(300 billion minutes)인데, 이동망의 경우는 600억에서 700억 분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BT의 접속망의 비용을 이동망의 착·발신 이용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분당 6-7 펜스 정도로 추정된다.

이동망 착신료가 높은 두 번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망의 크기에 의존하는 망 외부성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동망에 가입하고자 하는 잠재 가입자들이 존재할 때 그들의 효용은 이용효용 이외에 접속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모든 가입자들과의 통신에 따른 망 외부성 효용을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효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착신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로부터 보조하는 형태로 사업자가 신규 잠재 고객들의 유치에 위한 네트워크 크기 확대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착신 비용이 크다는 논리이다. 즉, 이러한 외부성을 반영하는 부분으로서 단독발생 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착신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트워크 원가 및 외부성 요인에 대해서 유선사업자들은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동망과 고정망의 착신료 간의 매우 큰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Sprint는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수행한 연구에 기초하여 이동망의 착신호에 대한 비용을 대략 분당 3.9(약 2.5펜스)에서 6.6센

트(약 4.2펜스)로 추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동망 착신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이동망의 규모의 경제효과로서 이동망의 통신시스템의 모듈성(modularity)이 장비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비용이 고정망의 그것에 비해 싼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TU-T SG3, 2002).

또한, 이동망 비용추정에 여러 문제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즉, 고정망의 경우 수년에 걸쳐서 여러 비용 모델이 적용된, 비용 추정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신뢰성을 갖으나 이동망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작되었고 검증과 확인과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망 외부성에 대해서도 기존 침투율과 양방향 트래픽을 고려할 때 고정망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존재하므로 상호접속 측면에서는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고정망과 이동망의 착신료의 사이의 큰 괴리의 요인으로 이동망 착신 시장의 경쟁 부재와 비대칭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동망 사업자 각각이 자신의 착신 시장을 조정하고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됨으로써 경쟁 부재가 발생하고 이는 착신 시장의 요금 결정자가 된다는 논리이다. 또한 고정망의 경우 타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부과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규제 대상인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망에 우호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비대칭적 착신요금 괴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ITU-T SG3, 2002).

이러한 상반된 착신료 괴리요인들이 아직까지 명확히 정돈되어 제도상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사업자 측면별로 제시된 요인은 그 나름대로 타

6) BS는 BTS(Base Transceiver System), BSC(Base Station Controller, BSM(Base Station Manager)로 구성

7) Anderson Management International의 "Cost Oriented Access and Interconnection in Sweden"로 ITU-T SG3(2002. 6)에 발표되었음(재인용).

당성과 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간의 조정과 타협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전제해야 할 사항은 세계의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III. ITU의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동향

ITU-T에서 국제 이동망 착신료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2001년 6월 러시아에서 제안한 기고서에 기인한다.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이동망 착신료가 너무 높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ITU Rec. D.93에 이동망 및 고정망 착신료 차이를 명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제안에 대한 연구가 Study Group 3, Working Party 2/3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금년에는 이동망 비용구조와 국가간 이동망 착신비용과 요금차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본고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동망의 비용구조는 기존의 유선망과 많은 차이

를 보인다. 이동망에서는 가입자에게 배타적으로 점유되는 물리적 전송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고정망의 경우 가입자 접속에 의해서 여러 네트워크 비용이 존재하는 가입자 회선(local loop)과 같은 접속회선이 이동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망은 최소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신 혹은 착신 트래픽의 양과는 무관한 장비비를 필요로 한다. 이를 MCP(Minimum Coverage Presence; Analysys, 2001)로 정의하고 인정되고 있으나, MCP 범위와 포함 요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Ofcom의 경우 MCP는 기지국(Based station)을 위한 Macro Site 임대비 및 준비비용과 운용시스템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Vodafone은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호(single call)를 다른 지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 장비만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MCP의 개념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ITU-T Rec. D.140의 첨부 A의 일부가 수정제안되었다.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ITU-T Rec. D.140 수정제안 사항

<p><b>A.1.3 National extension</b></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transmission facilities; (삭제)</li> <li>■ national switching facilities; (삭제)</li> <li>■ <i>national fixed transmission and switching facilities and/or conveyance and switching facilities of national mobile networks</i></li> <li>■ ..... local delivery system(삭제) <i>customer access.</i></li> </ul>
<p><b>A.2.1 Direct costs</b></p> <p>These are (삭제) : <i>Direct cost derive from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consist of</i></p> <p>.....</p>
<p><b>A.2.2 Indirect costs</b></p> <p>..... <i>To indirect costs belon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etwork management and planning;</i></li> </ul>

- *in case of mobile networks, cost of minimum coverage presence;*
- *relevant spectrum and license fees;*
- *billing and customer management.*

*These may include costs which have a indirect relationship to all services provided by some operators*

Section A.1.3 National Extensio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onveyance and switching facilities of national mobile networks”으로 이는 이동망에 착신되는 국제호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정 전송 및 교환장비는 이동망의 장비와 비교, 차별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서 표현되었으며, 이동망에 ‘a local delivery system’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정 및 이동망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customer access’로 표현되어 제안되었다.

Section A.2.1 Direct costs에서는 “These are” 대신에 “Direct cost derive directly from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consist of”로 바꾸었으며 이는 Sections A.2.2 Indirect Costs와 A.2.3 Common Costs 등 편집상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정 제안되었다.

Section A.2.2 Indirect Costs에서는 네 개의 항목, “network management and planning; in case of mobile networks, cost of minimum coverage presence; relevant spectrum and license fees; billing and customer management”으로 추가 제안되었다. 특히, 간접비용 요소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여 이동망 착신 비용산정에 있어 구체성과 정밀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정 문장, “These may include costs which have a indirect relationship to all services provided by some operators”는 사업자별로 달리 나타나는 몇몇 예를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고정망에서 분류되는 트래픽 관

련 설비와 비관련 설비구분을 이동망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과 절차가 제안<sup>8)</sup>되었다. 비관련 설비인 NTS(Non-Traffic Sensitive) 시스템은 이동망의 MCP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국제 이동망 착신료 관련 표준 기고문이 실제 표준 권고안으로 승인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발전정도가 선진국 및 미개발국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착신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국가들이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경로로 접속료 이슈를 부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정망 착신료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사업자 및 규제자 차원에서 국제 이동망 착신료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및 시사점

ITU-T Study Group 3은 통신 관련 기술표준을 다루는 여타 연구그룹과는 다르게 통신경제 및 정책 이슈를 포함한 요금, 회계 및 국가간 정산원칙 등을 표준화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연구그룹이 기본적

8) <http://www.itu.int/inudoc/int-t/com3/contr/01-04/020.html> 참조



으로 통신 관련 기술자들이 참가하여 기술 표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SG 3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통신 경영/경제/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자국 및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이슈화와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되므로 표준화대상을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또한 ITU의 권고안으로 승인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복잡한 절차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술표준화 승인절차(AAP: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이외에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SG 3에서 의결 또는 채택된 권고안은 ITU 회원국에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간 합의사항으로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TAP 절차에는 3개월의 회원국들간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은 최종 결정과정에 이르기 전에 여러 차례의 수정과정이 반복된다.

특히, 본 고에서 다룬 국제 이동망 착신료 이슈는 통신시장 진화에 적합하도록 ITU 권고안 D 시리즈의 제·개정 작업을 하는 Working Party 2/3에서 주로 연구된다. 국제 이동망 착신 관련 주요 내용은 D.93, D.140, D.150 그리고 Series D Supplemen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요 권고안인 D.93과 D.140은 2000년에 개정되었으나 현재 국제 이동망 착신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개정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간 상호접속 이슈는 동전의 양면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신의 양방향성 특성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국내 이동망 착신과 국내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망 착신이 존재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

의 착신료 수준뿐 아니라 국내 착신료 수준도 대상이 된다. 국내의 국제 이동망 착신료 수준이 다른 통신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큰 논의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유럽 선진국의 이동망 착신 서비스의 경우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 유선가입자가 고가의 착신료로 유럽 국가의 이동망 발전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측면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라도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문제나 국제기구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동망 착신료의 변화는 유·무선 사업자의 경영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안이다. 예컨대 'MCP' 라는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이동망 요소가 국가간 합의에 의해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또한 국제 이동망 착신료 대상 원가범위에 반영토록 의견에 일치될 보게 된다면 국제 착신료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유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국제 통화료를 낮출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할 것이고 결국 국내 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sup>9)</sup>가 되나, 이동망 사업자에게는 국내 착신료를 낮추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간 그리고 규제 기관간의 심도있는 협의를 바탕으로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Analysys, Load map for the LRIC model of UK mobile network costs developed for

9) 물론 국제 Mobile to Mobile 측면에서는 이동망 사업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혜택이 될 수 있음



- OFTEL by Analysys, 2001, available at <http://www.analysys.com>.
- [2] ITU-T Rec. D.93, "GENERAL TARIFF PRINCIPLES: General tariff principles - Charging and accounting in the mobile service", 2000, 4.
- [3] ITU-T Rec. D.140, "GENERAL TARIFF PRINCIPLES: General tariff principles - Charging and accounting in the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2000, 10.
- [4] ITU-T SG3, "Rapporteur's report of the Rapporteur Group responsible for studying mobile service termination rates" ITU-T SG3 and Working party 2/3 meeting of 6-7 June 2002.
- [5] INTUG, "Termination on International Calls to mobile network", Submission By INTUG to ITU-T SG3 and Working party 2/3 meeting of 6-7 June 2002, available at [http://www.intug.net/submissions/ITU-T-SG3\\_intl\\_termination\\_revised.html](http://www.intug.net/submissions/ITU-T-SG3_intl_termination_revised.html)
- [6] Republic of Korea,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ocedure for Traffic Sensitive & Non-traffic Sensitive System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 Contribution paper to the meeting of ITU-T SG3 & Working parties, 2002, 6, available at <http://www.itu.int/itudoc/itu-t/com3/contr/01-04/020.html>
- [7]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of Russia (TAR), "Accounting for Traffic Terminating on Mobile Network", ITU-T SG3 and Working party meeting of 11-15 June 2001, available at <http://www.itu.int/md/meetingdoc.asp?lang=e&type=folder&parent=T01-SG03-010611-D>
- [8] 김문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보고: ITU-T SG3 및 Working Parties 회의", TTA Journal, 제82호, pp.188-192, 2002, 7/8.
- [9] [http://www.gii.co.jp/english/tg8394\\_teleogeography.html](http://www.gii.co.jp/english/tg8394_teleogeography.html)
- [10] <http://www.itu.int/osg/spu/ni/fmi/intro.html>
- [11] <http://www.ustr.gov/sectors/industry/Telecom1377/2002review.PDF> 

### 호주 텔스트라 "cdma2000 도입 검토"

호주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스트라가 차세대 이동 표준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2000'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9월 11일 보도했다. AWSJ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최근 제3세대 이동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표준 기술선정에 고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일부 기업이 채택해 성공한 'cdma2000'을 유력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텔스트라의 데이비드 토데이 부장은 "cdma2000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한국 업체들과 일본의 KDDI 등이 현지 이동통신 시장에서 cdma2000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텔스트라가 cdma2000 기술을 채택할 경우 노키아 등 WCDMA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 휴대폰 업체들로서는 엄청난 수의 잠재고객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텔스트라는 총 59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호주 이동 시장 점유율이 45%에 달하는 최대 업체다.